

수의계약 요청 사유서

계약건명	현동중계펌프장 노후 설비 교체 공사
소요예산	금163,130,000원
계약업체	(주)가온텍
수의계약 법적근거	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
수의계약 사유	- 현동중계펌프장의 기존 체인식 컨베이어는 노후 등으로 체인이 파손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여 수선 비용 증가 및 협잡물 이송 불가 등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어 설비 교체가 시급한 상황임. - 해당 제품은 진해동부많은물재생센터에서 현재 사용 중으로 유지관리의 용이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됨에 따라 기존 설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, 중계펌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. - 또한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으로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함에 따라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하고자 함.

담당 : 시설운영팀 직급 : 지방공업서기 성명 : 양석민 (서명 또는 인)

팀장 : 시설운영팀장 직급 : 지방공업주사 성명 : 장재균 (서명 또는 인)

부서장 : 하수행정과장 직급 :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: 조병선 (서명 또는 인)

상기와 같이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26년 7월 일

창원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

